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08
------	-----

2023. 3.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이종환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2.2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종환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서울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와 시 산하기관의 각종 브랜드를 관리·조정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과 업무범위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임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나. 민간전문가의 역할,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광고·마케팅·경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하여 서울시 브랜드¹⁾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한 자격기준, 업무범위,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 등(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개정안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각종 브랜드 정책을 체계화하고 관리·조정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서울브랜드총괄관)를 위촉하여 서울 브랜드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상징물의 종류) 중 제2호는 브랜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별표로써 현 서울시 브랜드인 “I·SEOUL·U”의 의미 등과 서울시 브랜드의 연혁을 설명하고 있음.

- 최근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국내외의 주류 문화를 형성해 가는 분위기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의 활용은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참여와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행정 분야에 위촉·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정책상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개정안은 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 시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시장 등이 자의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위촉함으로써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임.

< 서울브랜드총괄관 자격기준(안 제6조제2항 각 호) >

구분	조문	준용 대상
제1호	대학에서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총괄건축가 ·「건축기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호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주택정책실장 응모자격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189호)
제3호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	

-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브랜드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것을 감안하여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임기 역시 2년으로 정하고 서울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 브랜드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 측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겸임 관련 규정은 위촉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동 조례의 개정 취지에 따라 향후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 등(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개정안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를 브랜드 정책 관련 자문에만 한정하지 않고, 민간 경력을 통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까지 다룰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안 제6조제4항 각 호) >

구분	내용	브랜드위원회 자문범위
제1호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해당 기능과 유사
제2호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제3호	시 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민관협력 방안 자문에 한정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브랜드 정책 관련 자문

- 현행 서울브랜드위원회는 브랜드 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조정만을 수행하고 의결권한이 없어 실제 집행기관에 자문결과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장의 요청에 따라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브랜드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는 경우,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서울시는 2015년 출범한 “I·SEOUL·U” 를 새로운 서울시 브랜드로 교체하기 위하여 선호도 조사(2차)를 실시하고 있는 중임.

(3) 수당의 적정 규모(안 제6조제7항)

-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브랜드총괄관에 준하는 민간전문가로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²⁾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총괄건축가(2014.9. 최초위촉)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직으로서 지급되는 수당 또한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음. (현재 1일 8시간, 주 4일씩 4주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타 수당 포함 2023년에는 1억 2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비용추계서 참조.)
- 다만, 상위법령의 규정 없이 조례 개정만으로 비상근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2)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총괄건축가의 수당) ①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총괄건축가의 수당 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한 단가를 말한다), 학술 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상위법령의 규정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의안번호
508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종환의원	2023. 2.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서울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와 시 산하기관의 각종 브랜드를 관리·조정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과 업무범위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임기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민간전문가의 역할,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추진경과	○ 2023. 2. 6.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이종환 의원)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특이사항 없음		
대응방안	○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서울브랜드담당관	팀장	브랜드기획팀장 김현정 (☎2133-6187) 담당 행정6급 현미희 (☎2133-6194)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이종환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김규남,
김기덕, 김원중, 김원태,
남창진, 문성호, 윤종복,
이성배, 이원형, 이종배,
이효원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서울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와 시 산하기관의 각종 브랜드를 관리·조정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과 업무범위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임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나. 민간전문가의 역할,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의2를 제7조의2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이하 “서울브랜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대학에서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

③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2.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시 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⑤ 시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 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이하 “서울브랜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

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

· 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

③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비상근직
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

2.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
립에 대한 자문

3. 시 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⑤ 시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
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
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
의 업무(입찰, 현상 공모, 용역 수

제6조 ~ 제9조 (생략)

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 제10조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문서번호

2023020100000014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종환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

접수일 : 2023.02.06.

회신일 : 2023.02.08.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서울브랜드총괄관을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임기 규정을 신설하고, 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역할,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추계의 전제

- 안 제6조 제2항 제 2호 자격요건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를 참고하여 인건비는 1급 연봉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
- 6조 제7항에 따라 적정 횟수의 자문 수당 산정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나.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70,140천원(연평균 54,02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 (안 제6조 제4항 등)	54,028	54,028	54,028	54,028	54,028	54,028	270,140
	소계(b)	54,028	54,028	54,028	54,028	54,028	54,028	270,140
총비용(b-a)		54,028	54,028	54,028	54,028	54,028	54,028	270,140

- 서울브랜드총괄관 총 운영비 ≙ 270,140천원

- 산출방식 : 연간(2024~2028) 비용의 합산 : 54,028천원(44,428천원 + 9,600천원) × 5년
- 연간 브랜드총괄관 인건비 = 1급 공무원 시간당 최대연봉액 × 주2일 전일 근무가정 시 연 근무시간
= 57,849원 × 8시간 × 2일 × 4주 × 12개월 = 44,428천원
- 연간 브랜드총괄관 수당 = 월 자문횟수 × 수당 × 12월 = 4회 × 200천원 × 12월
= 9,600천원

- ※ 연봉은 1급 공무원 연봉 상한액인 122,177천원(2023 지방공무원 업무 등 보수지침 p141)으로 산정.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기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평균 권고 시간(실제 근무시간과 다름)인 176시간으로 산정하여 도출한 2,112시간으로 나눈 57,849원(소수 5자리 이하 절사)을 시급으로 산정
- ※ 서울브랜드총괄관을 운영 예정인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비상임 위촉직인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을 참고하되,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제36조 총괄건축가는 산하조직관련 조항을 염두에 둔 점 등 건축관련 업무에 비해 도시전체 브랜드관련 자문업무량이 적다는 담당부서 의견을 참고하여 총괄건축가의 주4회 근무의 절반 수준인 주 2회 근무 가정(8시간*2일*4주*12개월)하여 산정
- ※ 자문수당 지급기준은 「202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하고 월 4회 자문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
- ※ 기타 서울시 브랜드를 총괄차원에서 학술세미나, 공무국외여행 관련 비용은 서울총괄건축가와 동일하다고 가정

[참고] 2023년도 서울총괄건축가 사업비 내역(도시공간기획담당관): 총 128,470천원

사업명	사업명	예산액
·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 총괄건축가 수당	64,108원*8시간*4일*4주*12개월
	○ 학술세미나, 워크샵 등 개최	5,000,000원*2회
	○ 민간인국외여비	10,000,000원*2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류동균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